계약학과운영규정

(신설 2015.8.13.)

제1장 총칙

제1조【목적】이 규정은 「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와 「협성대학교 학칙」제4조 1항 별표1-2 및 제21장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제73조의 2에 의해 설치하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【학위과정】계약으로 설치하는 학과(이하 “계약학과”라 한다)에는 학사학위과정(이하 “학사과정”이라 한다), 석사학위과정(이하 “석사과정”이라 한다), 박사학위과정(이하 “박사과정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제3조【계약학과의 명칭, 정원 및 학위】①계약학과의 명칭, 학생정원 및 학위명은 대학원 학칙 [별표 1-2]와 같다.(개정 2025.8.26.)

②계약학과의 입학 학생정원은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8조 제1항과 ·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입학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2장 입학 · 편입학

제4조【입학자격】①학사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

②석사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(또는 예정)하였거나,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

③박사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(또는 예정)하였거나,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,

제5조【학생의 선발】①계약학과는 서류전형, 면접고사 등 전형방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【학부 편입학 자격】①본교 제2학년, 제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직전 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여야 한다.

②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제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다.

제3장 학기 · 수업

제7조【학기】학기는 매 학년도 2개 학기로 한다.

제8조【수업일수】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.

제9조【수업】수업은 출석수업·현장실습수업·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부령, 대학 및 대학원 학칙에 의하여 본교 또는 계약산업체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.

제4장 학부 교육과정 · 이수 · 수료 · 수업연한

제10조【교육과정의 편성·이수·운영】①교육과정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체 등과의 계약시 요구나 의뢰받은 내용을 반영하되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한다.

②그 기준은 총 학점으로 하고, 교과목 이수단위를 1학점에서 3학점까지 정할 수 있다.

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상의 수강과목은 담당교수의 지도에 따라 이수 한다.

④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구분은 전공, 교양, 자유선택으로 하며 이수과목은 필수와 선택 구분 없이 한다.

⑤교양 이수교과목은 본교에서 지정하는 e-learning 교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11조【교육과정 이수 인정】「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 해당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세부지침은 따로 정한다.

제12조【수업연한】계약학과의 수업연한은 본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.

제13조【졸업학점】각 학과의 졸업학점은 [별표 2]와 같다.

제5장 대학원 교육과정 · 이수 · 수료 · 수업연한

제14조【교육과정의 편성·이수】교육과정의 편성·이수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칙에 따른다.

제15조【교육과정 이수 인정】「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 해당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세부지침은 따로 정한다.

제16조【이수학점】계약학과 특수대학원 각 대학원별 이수학점은 [별표 1]과 같으며, 학위과정의 신청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.

제17조【학위논문대체】계약학과 특수대학원 각 대학원별 논문대체 유형 및 방법은 학위청구논문대체 전공교과목 이수 및 학점취득으로 한다.

제18조【종합시험 응시자격】계약학과 특수대학원 각 대학원별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18학점이상 취득한 자로서 4학기이상 재학중인자로 한다.

제18조의2【학사관리 등】①그 밖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, 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와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②산업교육기관은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, 수업방식, 학생만족도, 학생의 학업성취 등 산업체 등에 알려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6.10.15.]

제6장 계약학과 운영 · 관리 등

제19조【계약학과 설치·운영기간】계약학과의 설치·운영 기간은 학사과정은 4년(편입은 2년 이상), 석사과정은 4학기 이상, 박사과정은 5학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제20조【계약학과 운영위원회】①계약학과의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은 계약학과에서 주관하며 위원장은 계약학과 학과장이 한다.(개정 2015.12.2.)(개정 2021.9.29.)

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을 관련 교직원,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촉한다. 단, 위원 중 1/3 이상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5.12.2.)

③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계약학과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
2. 계약학과의 설치 및 폐지
3. 계약학과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
4.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
5. 계약학과 교육과정 편성

제21조【계약학과의 운영경비와 부담】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은 국가, 지방자치 단체나 산업체 등과의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.

제22조【수업료 등 납부】①「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약학과는 학생에게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
②「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약학과의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23조【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】①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·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.

②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. 다만, 산업체 등의 도산, 구조 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본인이 등록금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.

제24조【학칙적용 예외】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서 정한 휴학, 전과, 재입학, 복수전공, 부전공, 연계전공 등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. 단, 계약학과 학생이 출산 및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수업 일수의 1/3 이상 수업 출석이 불가한 경우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제청에 의해 총장이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7장 준용규정

제25조【규정적용 우선순위】①산업안전보건학과는 화성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운영되며, 해당 기관의 운영지침을 따른다.(신설 2025.8.26.)

②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협성대학교 계약학과 운영 세부지침을 우선 적용하고, 그다음 계약학과가 소속된 대학(원) 학칙과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.(개정 2025.8.26.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제20조 제2항(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)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3.18.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2.15.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9.29.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8.26.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6.10.15.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삭제 (개정 2016.8.22.)(삭제 2019.12.16.)
[별표 2]학부(계약학과) 졸업 최소 이수학점(개정 2016.8.22.)(개정 2020.3.18.)(개정 2021.2.15.)

대학명	학과	전공	학점 인정 (전적대학)	졸업 학점 (~2019학번)	졸업 학점 (2020~학번)
계약 학부	사회복지학과	30 학점	68 학점	135 학점	130 학점
	아동보육학과	30 학점	68 학점	135 학점	130 학점
	유통경영학과	30 학점	68 학점	135 학점	130 학점